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지원센터 연계 강화>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843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강화 등	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의 연계 강화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퇴학·자퇴·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미진학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한 해에만 52,981명이 늘었고, 2023년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됨.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영역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음. 무상제공 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달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재는 사비로 구매하

여야 하는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와 달리 지자체별로 소수만 설치·운영되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위는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하며, 자격·수준·수도 학교 선생님에 비하여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적·권고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학교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현행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현행 6개월)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제5항),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서면·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알리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강화 등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u>청소년의</u>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u> ----- -----.
④ (생략)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u>준비</u>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지원)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u>준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도서비 등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u>
<신설>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위

현행	개정안
4. (생략) <신설>	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 제2조¹⁾는 학교 밖 청소년을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2020년 32,027명에서 2022년 52,98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23년말 기준 16만 7,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단위: 명, %)

연도	학업중단율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0.6	32,027	11,612	5,976	14,439
2021년	0.8	42,755	15,389	7,235	20,131
2022년	1.0	52,981	19,415	9,585	23,981

자료: 교육부

<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현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 >

(단위: 천명)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수 ① = ② - (③ + ④)			
	(6-17세 기준)	학령인구② (주민등록)	학생③ (교육통계)	해외 순출국④ (국제인구이동통계)
2021년	146	5,589	5,344	99
2022년	168	5,540	5,298	74
2023년	167	5,480	5,240	73

② (학령인구) 전년 12월 31일 기준 6-17세 주민등록 인구 수

③ (학생) 각년 4월 1일 기준 6-17세 학생 수 (연령은 전년 12월31일 기준)

④ (해외순출국) 전년 12월 기준 6-17세 순출국 수(출국자-입국자) 18년 누적

※국제인구이동 월별 통계에서 만나이만 공표하기 때문에 누적 합산 시 생월에 따른 오차 가능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제3조제3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

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 제31조제1항²⁾ 및 「교육기본법」 제4조³⁾에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보이는데,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⁴⁾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이하 “검정고시”라 함) 준비와 관련한 지원내용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도서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 제9조제3항⁵⁾은 교육지원의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
- 2)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4조6)는 교육지원의 방법을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재취학·재입학·진학 등에 필요한 정보, 시험준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원내용에 도서비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침(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매뉴얼에 따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교재,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기존학교에 복귀하거나 대안학교 등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함.

<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지원 세부실적 >

(단위: 명)

학업동기 강화	기초 학습	검정 고시	대학 진학	학업 복귀	기초 소양 교육	학업관련 비용지원	기타	지원인원 (연인원)
4,278	32,811	284,051	34,177	737	21,672	5,530	11,551	394,807

자료: 여성가족부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는 정보제공, 도서비 및 학원비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도서비 지원을 대표적으로 법률에 예시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교재,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 이를 명시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다음, 개정안은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또는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제9조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취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입학하거나, 대안학교에 진학한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 신분으로 돌아간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⁷⁾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복귀한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 신분이 되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우 관계나 진로문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학교로 복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장의 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본인이 상담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입학, 재취학 또는 진학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의 지원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취학, 재입학 또는

7)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진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시험 준비를 위한 도서비’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학력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의 범위를 오히려 한정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에 복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의 지원 필요성은 동의하나,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도 학교의 장에게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상담 등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기도 교육청은 ‘시험 준비를 위한 도서비’를 상위법에 명시하여 한정하는 것은 학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제한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에 복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학생 본인의 필요와 희망을 존중하여 시행되어야 하므로, 학교장의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의 연계 강화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유 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u>청소년에게</u>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 ----- ----- ----- ----- <u>청소년</u> <u>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u> ----- -----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이 경우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u><신설></u> ⑥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12개월</u>----- ----- ----- ----- ----- ----- ----- ----- ----- ----- ----- ----- ----- ----- ----- ----- ----- ⑥ 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서면·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먼저,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⁹⁾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함)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하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지원센터 연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센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현행법 제15조제4항은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¹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 이상’이 24.1%, ‘지금까지 이용한 적 없다’가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를 그만둔 후 기관 및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시기 >

(단위: %)

학교를 그만둔 직후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 미만	학교를 그만둔 후 3~6개월 미만	학교를 그만둔 후 6개월~1년 미만	학교를 그만둔 후 1년~2년 미만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이상	지금까지 이용한적 없음
36.0	19.0	9.8	9.3	7.2	7.6	5.4

출처: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12.

이에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장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가능 기간 및 사후동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유입되지 못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

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¹¹⁾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②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③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사후 동의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 이용은 해당 청소년의 자유 의지에 달린 문제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청소년 등에게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청소년 등이 기간 동안 지원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확대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2024년 3월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422호, 시행 2024. 9.27.)으로 2024년 9월 27일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됨.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사후 동의기간 연장조항을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도 안내하여 지원센터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유기간은 일관된 입법례가 없어 처리목적

달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나, 학업중단 이후 지원센터 방문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적법·정당하게 수집되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학교장 및 단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며, 개정안을 따를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익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